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0. 6. 10.(수) 15: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박성원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0년 5월 29일

○ 회부일자: 2020년 6월 1일

3. 제안이유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비효율적인 공문서 처리 방식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공문책임관 지정·운영(안 제4조)
- 보고형식의 간소화(안 제5조)
- 공문 게시판 활용(안 제6조)
- 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안 제7조)
- 의견수렴(안 제8조)
- 평가(안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교육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감축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이 공문책임관을 지정하여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실제 공문서를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할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아울러, 안 제9조에서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문서 감축 성과를 성과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음
- 과도한 공문서 생산과 시행에 따른 일선 교육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자율적인 개선 노력에 중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조례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도 없을 것으로 사료됨